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정 보 보 호 산 업 의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정보보호 부분의 투자나 인력 현황 등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00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업을 소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기간통신사업자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27. ~ 10.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정보보호 공시 강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등)”을 “(정보보호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
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 공
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
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 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제8조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를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정보통신 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공시하되”를 “공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전자공시시스템”을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공시방법”을 “공시 방법”으로 한다.

⑥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27조제2항제15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나목부터 라목까지(종전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300	600	1,000
--	--------------	-----	-----	-------

법 제41조제1항제2호
법 제41조제1항제3호
법 제41조제1항제4호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등) <u><신 설></u>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신 설>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 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③ -----

-----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
----- 포함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4. ----- 정보통신서비스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
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
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가 주관하여 공시하되, 공시내
용에 대해서는 미리 최고경영자
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
호 공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공시내용의
작성기준, 공시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④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 공시하며-----

-----.

⑤ -----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
-----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

⑥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
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
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
에 입력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공시 방법 -----

-----.

제27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 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 다. 1. ~ 14. (생략) 15. <u>제8조제3항에 따른 전자공 시시스템의 구축·운영</u> 16. ~ 18. (생략) ③·④ (생략) <u><신설></u>	같음) ② ----- -----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제8조제5항</u>----- ----- 16. ~ 1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u>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2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연 락 처	(044) 202 - 6453